



#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

강성호 연구위원, 류건식 선임연구위원

-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대부분은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함
  - 이에 본고에서는 퇴직소득세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퇴직소득공제에 대해 검토하고 퇴직소득을 연금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- 우리나라의 퇴직소득은 소득공제수준이 높아 일시금 수급 시에도 세부담이 크지 않아 연금화 유인이 약함
  - 우리나라 근로자의 14.2%는 2015년 한 해 동안 퇴직경험이 있고(근속기간 5.7년), 퇴직급여는 1인당 1,604만 원 수준이며, 이중 807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음(퇴직소득공제율 50.3%)
  - 높은 퇴직소득공제율은 과세표준소득을 낮추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며, 이는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(가칭, 실효퇴직소득세율)로 나타내면 4.4% 수준임
  - 이로 인해 퇴직소득세의 30%를 감면받게 되는 연금세제혜택도 크지 않아 연금 수급요건(55세 이상)을 갖춘 퇴직자의 일시금 선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
- 퇴직소득의 대부분은 사업주 부담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(이연퇴직소득)이므로, 이연퇴직소득 수급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 있음
  - 현재 이연퇴직소득은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급하든 과세 시 퇴직소득세를 기본으로 하므로 퇴직소득세 산출의 중요한 요소인 퇴직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함
- 조세재정 중립적 측면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퇴직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함
  - 첫째,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은 강화될 필요가 있음
  - 둘째, 증가된 퇴직소득세 재원만큼 연금소득세를 감소해 줌으로써 조세재정 중립하에 연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
  - 셋째, 퇴직소득 지급을 퇴직연금(혹은 국민연금) 수급연령인 55세 이후(혹은 65세 이후)로 연기할 경우 이연에 따른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

## 1. 검토 배경



-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대부분은 일시금 수급(98.4%)<sup>1)</sup>을 선호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역할이 미흡함
-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금세제라는 점에서 퇴직연금세제 측면에서 원인을 검토할 필요 있음
  - 보험연구원(2015)에 의하면,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제지원 확대(33.4%)로 조사되었음(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단순화(24.5%), 연금지급의 안정성 확보(18.8%) 순)
  - 연금세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 납부시점의 세제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부시점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음
-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 체계에서는 급부시점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이 높아 일시금을 선택할 개연성이 큼
  - 현재 퇴직급여는 대부분 사업주 부담분(이연퇴직소득)에 의해 주로 발생되며, 이를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에 비해 퇴직소득세의 30%가 감면됨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크지 않게 되어 연금형태의 수급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
- 본고에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검토하고, 조세재정 중립<sup>2)</sup>하의 연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1) 금융감독원, 20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결과

2) 특정 조세제도의 내용이 변경하여도 전체 조세재정수지(수입-지출)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, 여기서는 퇴직소득세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퇴직소득세의 재정수지는 동일한 것을 의미함

## 2. 퇴직소득세 현황 및 문제점



-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4.2%는 퇴직을 경험하고, 퇴직까지 근속기간은 평균 5.7년인 것으로 나타남<sup>3)</sup>
  - 국세통계연보(2016)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15년 기준 1,726만 명이며, 이 중 퇴직경험 있는 근로자는 245만 명으로 나타남
  - 이들의 근속연수는 5.7년(임금근로자)으로 조사되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
- 퇴직자는 퇴직급여의 일정수준을 소득공제 받은 후 퇴직소득을 받게 되는데 이때 퇴직소득공제율 50.3% 수준이고, 이로 인해 과세표준소득이 감소하여 실효퇴직소득세율<sup>4)</sup>은 낮은 수준임
  -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39조 원(1인당 1,604만 원)이고, 퇴직소득공제는 19조 7,950억 원(1인당 807만 원)이므로 퇴직소득공제율은 50.3%임
  - 퇴직소득공제율을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49.7%만 과세대상 소득(과세표준소득)이 되고, 여기에 법정퇴직소득세율<sup>5)</sup>을 곱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됨
    - 이에 의하면, 과세표준소득은 19조 5,650억 원(1인당 797만 원)이며, 퇴직소득세는 1조 7,340억 원(1인당 71만 원)이 됨

〈표 1〉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

(단위: 십억 원, %)

퇴직급여(A)	퇴직소득공제(B)	퇴직소득 공제율(B/A)	과세표준소득 (A-B)	퇴직소득세 (결정세액, C)	실효퇴직소득세율	
					퇴직급여대비 (C/A)	과세표준대비 (C/{A-B})
39,360 (1,604만 원)	19,795 (807만 원)	50.3%	19,565 (797만 원)	1,734 (71만 원)	4.4	8.9

주: ( )안은 1인당 수준임  
 자료: 국세청, 2016년 국세통계연보

3) 국세청, 2016 국세통계연보; 통계청 보도자료,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참조  
 4)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로 표현됨  
 5) 법정세율은 소득세법(소득세법 제55조(세율))에서 정한 세율을 의미함

-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로 표현되는 실효퇴직소득세율 4.4%<sup>6)</sup>는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로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
  - 특히, 실효퇴직소득세율 4.4%는 일시금 수급 시 부담하는 수준(퇴직소득세 100%)이므로 연금 수급 시 실효퇴직소득세율은 3.1%(퇴직소득세의 70%)여서 세제혜택은 1.3%로 낮음
  -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21만 원(71만 원 × 30%) 수준이어서 연금화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<sup>7)</sup>

■ 따라서, 연금형태로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연금 수급요건(55세 이상)을 갖춘 퇴직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

- 퇴직급여 수급현황을 보면, 연금 수급요건(55세 이상)을 갖춘 퇴직자(계좌 수 15만 173개) 중 연금수급을 선택한 비율<sup>8)</sup>은 1.6%(계좌 수 2,389개)에 불과함
  - 이를 수급액 기준으로 보면, 전체 3조 7,108억 원 중에서 17.2%(6,389억 원) 수준임

〈표 2〉 유형별 퇴직급여 수급 현황(2016년 상반기 기준)

(단위: 개, 십억 원, %)

일시금수급		연금수급		합계	
계좌 수	금액	계좌 수	금액	계좌 수	금액
14,778	3,072	239	639	15,017	3,711
(98.4)	(82.8)	(1.6)	(17.2)	(100.0)	(100.0)

주: 일시금수급·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적립금액  
 자료: 금융감독원, 20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결과

### 3. 퇴직소득세 체계 및 퇴직소득공제의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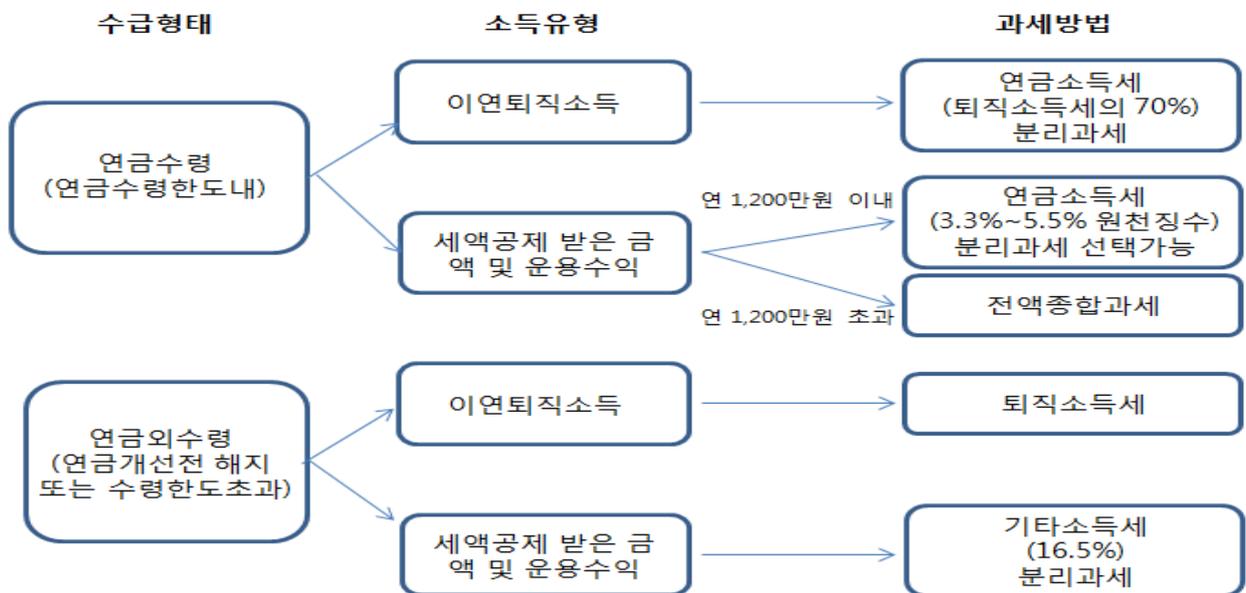


- 앞서와 같이 연금화 유인이 약한 이유는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퇴직소득공제가 많다는 것과 관련되는데, 이를 살펴보기 위해 퇴직소득세 체계 및 퇴직소득공제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
- 우리나라 퇴직소득은 수급형태 및 부담주체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 세제혜택의 차이가 발생함

6) 실효소득대체율을 과세표준액 대비 퇴직소득세로 표현하면 8.9%로 추정됨  
 7) 적립금액(1인 기준 1,604만 원)에서 21만 원의 세제혜택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급해야 함  
 8) 정부는 16년부터 연금수급비율 산출 시 퇴직급여수급 개시 계좌 기준으로 변경함

- 퇴직소득은 부담주체 및 성격에 따라 이연퇴직소득(사업주 부담분)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(본인 부담분 + 운용수익)으로 구분됨
- 이러한 퇴직소득은 연금 혹은 일시금(연금외수령)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이로 인해 세제혜택의 차이가 발생함
  -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되는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70% 수준으로 과세되고,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3~5%<sup>9)</sup>(연간 1,200만 원 이하인 경우)의 세율이 적용됨
  - 연금외수령(일시금 형태) 형태로 지급되는 이연퇴직소득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혜택이 없고,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16.5%(지방세 포함)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됨

〈그림 1〉 퇴직소득 지급형태 및 유형별 과세방법



주: 2015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,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임  
 자료: 금융감독원, 퇴직연금종합안내/연금수급 시 과세방법; 한국투자증권, IRP 과세체계

■ 퇴직소득의 대부분은 사업주 부담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(이연퇴직소득)이며, 본인부담 및 운용수익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

- 이를 납부시점의 보험료 관계로 설명하면 이연퇴직소득은 보험료율 8.3%에 해당되고,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간 최대 700만 원이나, 실제적인 가입률은 낮아 이로 인한 소득은 크지 않음
- 따라서, 급부시점에서 퇴직소득의 대부분은 이연퇴직소득(연간적립액 기준 본인부담분의 12.7배)이라고 할 수 있음

9) 지방세 포함 시 3.3~5.5%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됨. 단, 연간 1,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됨

〈표 3〉 이연퇴직소득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비교

구분	이연퇴직소득(사용자 부담분)	세액공제 받은 금액(본인 부담분)
보험료율	8.3%	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(1,800만 원 한도)
부담주체	사업주	본인
가입자(납부자) 수 <sup>1)</sup>	245만 명	38만 명
연간적립액(납부액) <sup>2)</sup>	19.1조 원	1.5조 원

주: 1) 2016 국세통계연보(2015년 기준)를 활용하여 정리

2) 금융감독원, 2016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를 참조함(사용자 부담분은 DB, DC, 기업형 IRP 적립금의 합산, 본인 부담분은 개인형 IRP의 적립금으로 함), <http://pension.fss.or.kr/fss/psn/main.jsp>

■ 이연퇴직소득은 수급형태와 무관하게 과세 시 퇴직소득세를 기본으로 하므로<sup>10)</sup> 퇴직소득세 산출의 중요한 요소인 퇴직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함

- 퇴직소득세 산출과정<sup>11)</sup>에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의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됨
- 근속연수공제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수준은 높아지되, 근속연수당 한계공제액이 증가하여 근속연수공제는 체증적으로 증가함

〈표 4〉 퇴직소득공제: 근속연수공제(2016년 기준)

근속연수	공제액	한계 공제액
5년 이하	30만 원 × 근속연수	30만 원
5년 초과 10년 이하	150만 원 + 50만 원 × (근속연수 - 5)	50만 원
10년 초과 20년 이하	400만 원 + 80만 원 × (근속연수 - 10)	80만 원
20년 초과	1,200만 원 + 120만 원 × (근속연수 - 20)	120만 원

자료: 소득세법 제48조(퇴직소득공제)

- 환산급여공제의 경우도 환산급여가 증가할수록 공제수준이 높아지나,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공제율은 감소하여 환산급여는 체감적으로 증가함
- 한편, 현실적으로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 모두가 공제되므로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

10) 〈그림 1〉 참조

11) 세부적 산출과정에 대한 사례는 〈부록〉 퇴직소득세 산출 사례 참조

〈표 5〉 퇴직소득공제: 환산급여공제(2016년 기준)

환산급여	공제액	한계 공제율
800만 원 이하	환산급여의 100%	100%
800만 원 초과 7,000만 원 이하	800만 원 + 800만 원 초과분의 60%	60%
7,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	4,520만 원 + 7,000만 원 초과분의 55%	55%
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	6,170만 원 + 1억 원 초과분의 45%	45%
3억 원 초과	15,170만 원 + 3억 원 초과분의 35%	35%

자료: 소득세법 제48조(퇴직소득공제)

■ 퇴직소득공제와 관련된 현행 퇴직연금세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

-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의 2단계 공제과정을 거치면서 공제수준이 과도하여 일시금 선호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음
- 연령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형태(연금수급 시 일시금 수급 시보다 퇴직소득세의 30%를 감면)에 따른 세제차이만 존재하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고려가 약함

#### 4. 정책제언



■ 조세재정 중립적 측면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퇴직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함

■ 첫째,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은 강화될 필요가 있음

-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일정수준의 소득공제(실제 공제율 50.3%)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데, 퇴직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수준은 낮아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음
- 따라서, 현행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하여 일시금 수급 유인을 약화시킬 필요 있음

■ 둘째, 증가된 퇴직소득세 재원만큼 연금소득세를 감소해 줌으로써 조세재정 중립하에 연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

- 위 안에 의해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연금소득세 감면을 통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

- 현행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의 30%를 감면받는데, 이를 추가로 확보된 조세수입만큼(예, 퇴직소득세의 50% 이상) 지원하되,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음
- 셋째, 퇴직소득 지급을 퇴직연금(혹은 국민연금) 지급연령인 55세 이후(혹은 65세 이후)로 연기할 경우 이연에 따른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우리나라 근로자는 높은 이직률로 인해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충분한 적립금액이 쌓이지 않으므로 적립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지급연기 시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함
  - 예를 들어, 55세 이후로 지급연령을 연기할 경우 1세당 추가 세제혜택 제공 등 **kiri**

## 〈부록〉 퇴직소득세 산출 사례

※ 가정: 퇴직급여 2억, 근속연수 25년인 경우

■ 퇴직소득 = 퇴직급여(퇴직소득금액) - 근속연수공제<sup>12)</sup>

● 근속연수 공제:  $[1,200만 원 + 120만 원 \times (25 - 20)] = 1,800만 원$

● 퇴직소득:  $2억 - 1,800만 원 = 18,200만 원$

■ 환산급여 = (퇴직소득 ÷ 근속연수) × 12

● 환산급여:  $18,200만 원 / 25 \times 12 = 8,736만 원$

■ 퇴직소득과세표준<sup>13)</sup> = 환산급여 - 환산급여공제<sup>14)</sup>

=  $[(\{퇴직급여(퇴직소득금액) - 근속연수공제\} \div 근속연수) \times 12] - 환산급여공제$

● 퇴직소득과세표준 =  $8,736만 원 - 4,520만 원 + (8,736만 원 - 7,000만 원) \times 55\%$   
 =  $8,736만 원 - (4,520만 원 + 955만 원)$   
 =  $8,736만 원 - 5,475만 원 = 3,261만 원$

■ 환산퇴직소득세 = 퇴직소득과세표준 × 세율

● 환산퇴직소득세 =  $3,261만 원 \times 누진세율$   
 =  $72만 원 + (3,261만 원 - 1,200만 원) \times 15\%$   
 =  $72만 원 + 2,061만 원 \times 15\% = 72만 원 + 309만 원 = 381만 원$

■ 최종퇴직소득세<sup>15)</sup> = 환산퇴직소득세 / 12 × 근속연수

● 최종퇴직소득세 =  $381만 원 / 12 \times 25년 = 32만 원 \times 25년 = 794만 원$

12) 소득세법 제48조(퇴직소득공제)

13) 소득세법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

14) 소득세법 제48조(퇴직소득공제)

15) 한국투자증권, 퇴직연금뉴스 vol.74 Spring 2015